

서울특별시 봉제박물관 관리·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462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봉제박물관이 위치하게될 종로구 창신동은 1960년대 이래 동대문 패션상권의 배후생산기지로 성장해 온 서울시 대표적 의류제조 밀집지역이나, 최근에는 봉제산업 쇠퇴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침체되고 있어 생활, 문화,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
- 나. 동 시설은 봉제의 기원과 발전 역사, 첨단기술 등을 보여주고, 패션·디자인·문화·예술 분야 등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음. 또한, 봉제인과 디자이너 연계 등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봉제 산업 관계자를 지원하는 한편,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임
- 다. 동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전시 뿐 아니라, 공동체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. 이에 봉제박물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전시기획·운영에 전문적이면서 지역과 봉제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봉제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
- 소재지 : 종로구 창신동 647-50,6(창신4가길 24, 24-1 2필지)
- 위탁기간 : 3년('17.3.1~'20.2.28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(공모)
- 소요예산 : 1,000백만원('17.3.1~'17.12.31)
 - ※ '17년도 : 건축물 준공 전, 개관 준비(유물 및 장비구매, 전시설계·설치 등)관련 비용
 - ※ '18년도 이후, 수익사업 발굴·운영 등을 통해 사업비 감축 도모('18년도 900백만원, '19년도 850백만원, '20년도 800백만원)

나. 주요 위탁사무

- 봉제박물관 개관 준비
- 패션봉제산업 관련 전시 및 창신송인 지역 재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
- 봉제박물관 시설관리·운영
- 각 분야 전문가 조직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, 활성화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봉제박물관 시설관리 및 운영은 제한된 공간에서 전시 뿐 아니라, 공동체 및

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전시기획·운영에 전문적이면서 지역과 봉제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필요

라. 기대효과

- 봉제산업 역사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기획, 운영하여 봉제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
- 봉제산업과 동대문, DDP를 연계하는 패션·봉제 플랫폼 역할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 도모
- 지역의 봉제산업과 문화, 생활사 및 서울성곽, 동대문디자인플라자, 돌산 및 채석장, 백남준 생가터 등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활성화 도모
-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신송인 지역재생의 중심시설 역할 수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7조

제7조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·미학적으로 조성하고, 서울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·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.
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,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·보존하도록 노력한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 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부서 자체사업비로 편성요구 중인 '17년도 사업비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산업정책팀 김성미 (☎2133 - 2587)